

이천시교통안전대책위원회운영조례안 심사보고서

2001. 7. 12
산업건설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01년 6월 28일 이천시장 제출
- 나. 회 부 일 자 : 2001년 6월 28일
- 다. 상 정 일 자 : 제48회 이천시의회(제1차 정례회)
제1차(2001. 7. 6) 산업건설위원회 상정
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답변, 의결

2. 제안설명요지(제안설명자 : 건설도시국장 박재한)

가. 제안이유

- 교통안전법 제13조에 의한 교통안전대책위원회는 서울특별시·광역시 및 도 단위 해당 자치단체에서만 구성 운영하여 왔으나, 월드컵을 대비하여 국무조정실에서 교통안전관리 강화의 방안으로 시·군 단위 기초자치단체까지 확대 구성 운영하도록 하는 지침을 시달
- 교통안전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2002년 월드컵 대비 교통사고 및 교통사고 사망자를 선진국 수준으로 감소시키고 시민의 교통안전을 대책을 확보

나. 주요골자

- 교통사고를 선진국 수준으로 감소하기 위한 기능 및 역할을 교통안전대책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추진함은 물론 지역의 교통정책수립에 참여(안 제2조)
- 지역중심의 교통안전관리 강화와 교통안전의식의 조기확산을 도모하기 위하여 민간 및 유관기관간의 공동 협조체제 구축 (안 제3조)
-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위임사항 처리를 위하여 건설도시국장을 반장으로 하는 “교통안전대책반” 설치 운영 (안 제8조)

3.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: 박창화)

○ 특별시·광역시 및 도에 교통안전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·도의 규칙으로 교통안전 대책위원회를 구성·운영하도록 되어 있으나 시·군에는 교통안전대책위원회의 설치근거가 없어 2002년 월드컵 대비 교통사고 및 교통사고 사망자수를 줄이고 교통 정책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 올리기 위하여 시에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자문기관으로 교통안전대책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써,

○ 안 제1조는 목적규정을 두었으며

○ 안 제2조에 위원회의 기능을 규정하였으나 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사무에 대하여 조언·권고·건의·심의 또는 조사를 목적으로 위원회를 자문기관으로 두어야 함에도 안 제2조의 기능중 평가, 점검 등의 규정사항은 위원회의 심의·결정기능이라고 볼 수 없으며,

○ 안 제3조의 위원회 구성은 교통안전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면 특별시·광역시 및 도의 교통안전대책위원회의 위원장을 시장 또는 도지사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안 제3조에서 구성하고자 하는 위원회의 위원장, 부위원장, 위원의 자격에 대하여 격상 및 구성하고자 하는 위원회 위원의 수와 위촉대상자 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고,

○ 안 제4조 제2항중 “위원장이 유고시에는 있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”의 표현을 “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”로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,

○ 안 제5조 내지 제8조는 위원회의 간사·서기, 회의개최·의결 및 안건배부에 대하여 규정 하였으며,

○ 안 제9조 및 제10조는 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교통안전대책반 설치를 규정하였으나 안 제9조 제3항 제7호 및 제8호는 입법형식상 안 제9조 제4항 및 제5항으로 수정 검토되어야 한다고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생략

6. 수정안의 요지

가. 수정일자 및 제안자 : 2001년 7월 6일 산업건설위원회
김정호 위원장의 5인 제출

나. 수정이유

- 교통안전대책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을 명확히 정함으로써 위원회의 운영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동 조례의 개선 및 보완이 필요한 조문 내용의 일부를 바로 정하려는 것임.

다. 수정주요골자

- 위원회의 심의·의결기능을 일부 축소하여 조정함(안 제2조)
- 위원회의 구성원을 격상시켜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자 새로이 정함(안 제3조)
- 자구등 잘못 표현된 조문내용의 일부를 바로 잡음(안 제4조)
- 입법형식을 바로 갖추기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함(안 제9조제3항)

7. 심사결과 : 일부 수정의결(만장일치)

8. 기타사항 : 없음

※ 첨부 : 이천시교통안전대책위원회운영조례안에대한수정안

(제48회-제2차)

이천시교통안전대책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한수정안

이천시교통안전대책위원회운영조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2조 본문중 “심의·결정”을 “심의·의결”로 하고, 동조 제1호중 “교통안전세부시행계획수립 및 추진실적 평가”를 “교통안전세부시행계획수립”으로 하고, 동조 제3호중 “각 기관의 주요교통안전시책결정 및 추진상황 점검”을 “각 기관의 주요교통안전시책”으로 한다.

안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3조(구성)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9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위원장은 시장으로 하고, 부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한다.

③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

1. 건설도시국장
2. 경찰서 교통관련과장 1명
3. 이천교육청 1명
4. 유관기관 교통전문가 1명
5. 대학교 및 대학에 재직하는 도시·교통관련분야 교수1명
6. 장애인단체 1명
7. 모범운전자 1명
8. 시의원 1명
9. 운수업체 1명
10. 언론기관 2명
11. 시민단체 5명

안 제4조제2항중 “위원장이 유고시에 있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”를 “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”로 하고, 동조 제3항중 “심의·결정”을 “심의·의결”로 한다.

안 제9조제3항중 “제7호”를 “제4항”으로 하고, “동조 동항 제8호”를 “제5항”으로 한다.

수정안 조문 대비표

개 정 안	수 정 안
<p>제2조(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·결정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<u>교통안전세부시행계획수립 및 추진실적평가</u> 2. (생략) 3. <u>각 기관의 주요 교통안전시책 결정 및 추진상황 점검</u> 4. ~ 10.(생략) <p>제3조(구성)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</p> <p>②위원장은 부시장으로하고, 부위원장은 건설도시국장으로 한다.</p> <p>③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<u>경찰서 교통관련과장 1명</u> 2. <u>시교육청 1명</u> 3. <u>유관기관 교통전문가 2명</u> 4. <u>대학교 및 대학에 재직하는 도시·교통관련분야 교수 1명</u> 5. <u>장애인 단체 1명</u> 6. <u>모범운전자 1명</u> 7. <u>시의원 1명</u> 8. <u>운수업체 1명</u> 9. <u>언론기관 2명</u> 10. <u>시민단체 5명</u> 	<p>제2조(기능)<u>심의·의결</u>....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<u>교통안전세부시행계획수립</u> 2.(제정안과 같음) 3. <u>각 기관의 주요 교통안전시책</u> 4. ~ 10.(제정안과 같음) <p>제3조(구성)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9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</p> <p>②위원장은 시장으로하고, 부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한다.</p> <p>③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<u>건설도시국장</u> 2. <u>경찰서 교통관련과장 1명</u> 3. <u>이천교육청 1명</u> 4. <u>유관기관 교통전문가 2명</u> 5. <u>대학교 및 대학에 재직하는 도시·교통관련분야 교수 1명</u> 6. <u>장애인 단체 1명</u> 7. <u>모범운전자 1명</u> 8. <u>시의원 1명</u> 9. <u>운수업체 1명</u> 10. <u>언론기관 2명</u> 11. <u>시민단체 5명</u>

개 정 안	수 정 안
<p>제4조(임무) ①(생략)</p> <p>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, <u>위원장이 유고시에는 있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.</u></p> <p>③위원은 위원장이 부의하는 안전에 대하여 <u>심의·결정한다.</u></p> <p>제9조(교통안전대책반 설치운영) ①~②(생략)</p> <p>③반장은 건설도시국장이 되고, 반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기획감사실장 2. 자치행정과장 3. 건설과장 4. 도시과장 5. 경찰서 교통지도계장 6. 교통안전에 관한 학식,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 자 7. 대책반에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고, 간사는 교통행정과장이 되며, 서기는 업무관련 담당주사가 된다. 8. 대책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. 	<p>제4조(임무) ①(제정안과 같음)</p> <p>②....., <u>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.</u></p> <p>③.....<u>심의·의결</u>.....</p> <p>제9조(교통안전대책반 설치운영) ①~②(제정안과 같음)</p> <p>③..... 1. 2. 3. 4. 5. 6.</p> <p>④대책반에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고, 간사는 교통행정과장이 되며, 서기는 업무관련 담당주사가 된다.</p> <p>⑤대책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.</p>